



공고  
2015년 7월 1일

Carmen Fariña  
뉴욕시 교육감

## 교육감 규정 A-101 개정— 입학, 재입학, 전학 및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 노티스

### I. 현재 검토중인 수정조항의 주제 및 목적 설명

교육감 규정 A-101은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에서의 학생 입학, 제적 및 전학에 관련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된 수정안은 2013년 10월 31일 발표된 이전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학생이 학교 등록시 나이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 항목 추가; (2) 학교에 적절하게 등록된 학생이나, 학생등록담당실, D75 프로그램 또는 특수교육 위원회에 의해 학교배정/등록된 학생은 그 누구도 배정/등록된 학교로부터 거부당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함; (3) 해당 존의 뉴욕시 교육청 운영 Pre-K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으로서 지원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예비등록되어 있거나 재학 중이며 다음 9월에 K-5학년이 될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은 해당 학교 입학에 우선권이 있으며, 존(zone) 재정비 계획으로 인하여 지원자의 존이 지원시기 중에 변경될 경우 이 학생은 본래 존 스쿨에 다닐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음을 명확히 함; (4) 비 존(non-zoned) 학교에서의 뉴욕시 교육청 운영 Pre-K 프로그램 입학 우선권을 설명; (5) 존 스쿨이 없는 초등 및 중학교 학생들은 학생의 주소지에서 전통적으로 배정해 오던 초등 및 중학교에 입학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함; (6) 초등 및 중학교 입학 정책을 명확히 함; (7) 이중언어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특수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어 해야하는 전학에 관한 승인이나 현재 학교에서 학생의 IEP에 명시된 특수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불가하여 특수교육 담당실에서 승인한 전학, 그리고 공정 공청회 명령에 의한 전학은 각기 해당 담당실에서 승인하고 학생 등록 담당실로 이관하여 학교배정을 받아야 함을 설명; (8)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등록 규정 갱신; (9) 학생이 학교 등록 시 거주지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항목 추가 및 홈리스 학생에 대한 거주자 증명서류 제출 예외조항 추가; (10) 홈리스나 보호자 없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장치 추가; (11) D75에서 고등학생을 비 D75 학교로 리스트 노티스 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함; (12) 교육청의 신규 조직도를 반영한 교육청 각 담당부서명 및 담당자 성명 갱신.

II. 제안된 사안의 전문을 보실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본 규정 전문 및 수정조항 전문은 교육정책 패널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AboutUs/leadership/PEP/publicnotice/2015-2016/August262015Regulations>

III. 현재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뉴욕시 학군 담당자의 이름, 담당실, 주소, 이메일 및 전화번호.

성명: Sonali Murarka  
소속부서: 학교등록 담당실  
주소: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  
이메일: [RegulationA-101@schools.nyc.gov](mailto:RegulationA-101@schools.nyc.gov)  
전화: 212-374-2140

서면 의견은 위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구두 의견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IV. 현재 검토중인 개정조항에 대해 위원회가 찬반투표를 실시할 교육정책 패널의 회의 일자, 시간 및 장소.

2015년 8월 26일 6:00 p.m.  
M.S. 131  
100 Hester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2